

의안번호	2213875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6.3.23.
추 계 번호	25B5855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가철도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93억원, 2029년 825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2,428억원(연평균 485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운영 등 (안 제39조의3제1항 제5호 신설)	793	809	825	-	-	2,428	485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철도 구간 중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구부러진 노선에 대한 설치비용만을 반영한 것임. 영상기록장치의 유지보수 등 운영비는 각 노선의 환경과 운영주체의 인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의3제1항 제5호 신설 (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운영 등)	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통사고 상황 파악, 안전사고 방지,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.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,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1항) 5.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	추계여부	비고
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 (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운영 등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, 국가철도공단 등이 제출한 물량과 단가를 바탕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을 추산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본 추계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가철도 구간을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노선의 설치비용을 추산함
 -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의 경우 구부러진 노선에 관한 실태 및 공사계획 등이 부재하여 추계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제2조를 고려하여 추계 첫 해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균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¹⁾

1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2025.9.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%)	1.9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철도의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우려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·운영의무가 발생함에 따라, 현재 미설치된 구간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을 추산함
 - 현재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, 방법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어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대상 물량과 설치기준, 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산하며, 운영비용의 경우 현시점에 추정하기 곤란하여 포함하지 않았음
- (물량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철도노선 중 2,181개소가 곡률 1,000이하의 구부러진 노선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
 - 개정안 부칙 제2조²⁾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선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 첫 해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균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선로가 구부러진 노선 현황

(단위: 개소)

구분	계	서울	서부	동부	강원	충북	대전	전북	광주	전남	경북	대구	부산
합계	2,181	127	142	155	206	249	323	60	104	132	299	172	212
경부고속선	13						9					4	
호남고속선	5							1	4				
경부선	372	9	63				134					114	52
중앙선	87			26		8					49	4	
호남선	105						61	31	13				
강릉선	8				8								
경원선	62	10		52									
경의선	29	29											
경인선	34		34										

2) 제2조(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철도운영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구분	계	서울	서부	동부	강원	충북	대전	전북	광주	전남	경북	대구	부산
일산선	20	20											
경춘선	23			23									
과천선	15		15										
분당선	38			38									
경강선	3			3									
수인선	11		11										
안산선	18		18										
경전선	184								71	97			16
동해선	46											2	44
영동선	263				138						125		
충북선	104					46	58						
태백선	148				24	124							
전라선	19							12		7			
장항선	49						47	2					
기타선	525	59	1	13	36	71	14	14	16	28	125	48	100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(단가) 영상기록장치 설치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하므로, 최근 설치가 이뤄진 ‘경부고속2단계 취약 개소 영상감시설비 개량사업’의 1개 시설당 소요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
○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
[표 3] 유사사례 단가 내역

구분	금액(백만원)	합계(백만원)	수량(개소)	단가(백만원)
공사비	16,757	18,767	179	105
설계비	349			
감리비	1,661			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[표 4] 유사사례 단가 세부내역 예시

구 분		금액(백만원)
계		105
공사비	선로변 장비설치	13
	선로변 선로공사	58
	관제센터 감시실	21
설계		3
감리		10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가철도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93억 3,000만원, 2029년 825억 3,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,427억 8,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설치대수(A, 대)	727	727	727	—	—	2,181
단가(B) (b, 백만원)	109	111	114	—	—	—
합계(A×B)	79,330	80,916	82,534			242,780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철도 구간 중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구부러진 노선에 대한 설치비용만을 반영한 것임. 영상기록장치의 유지보수 등 운영비는 각 노선의 환경과 운영주체의 인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철도 구간 중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구부러진 노선에 대한 설치비용만을 반영한 것임. 영상기록장치의 유지보수 등 운영비는 각 노선의 환경과 운영주체의 인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